

[변경대비표]

1. 펀드명 : 타임폴리오워드타임증권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 작성기준일 : 2020.08.07

3. 정정사유 :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법시행령 제215조 반영
- 소득세법 제59조의3 반영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4. 효력발생일 : 2020.08.21

<신탁계약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 42 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법시행령 제215조 개정사항 반영	①~③ <생략> ④<신설>	①~③ <이하동일> 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 요청한 수익자총회에서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제37조에 따른 보수율로 6개월간 계산한 금액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2.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 (법률자문, 사업성평가, 금융자문 등) ⑥ 제4항 및 제5항과는 별도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펀드명 오기정정	2.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타임폴리오위드타임모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에 80% 이상 투자합니다.	2.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타임폴리오위드타임 증권 모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에 80% 이상 투자합니다
투자비용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동종유형평균보수)	-	-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주식추가 및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	(주 1)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 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	-
참조	페이지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37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0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미기재 반영	<추가>	2019.10.07 : S-P 클래스 추가 2019.10.14 : 최소투자금액 “500 만원이상” 삭제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이력 및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구 추가	<변경전 1>	<변경후 1>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동종유형평균보수)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변경전 2>	<변경후 2>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 9.16 시행)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예탁결제원 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 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 사항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0.03.10 시행)	<신설>	-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 요청한 수익자총회에서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손실 등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 제37조에 따른 보수율로 6개월간 계산한 금액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2.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법률자문, 사업성평가, 금융자문 등) - 제4항 및 제5항과는 별도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9.28 시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생략>-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생략>- 등록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추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이하동일>-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이하동일>- 등록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9.16 시행) (2019.1.15 시행)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생략>-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략>- 따라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이하동일>-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하동일>- 따라야 합니다.

<변경전1>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경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자산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강현담	1988	과장	11개	1,668억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년 2개월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타임폴리오위드타임증권모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경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자산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함병현	1984	본부장	11개	1,296억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년 4개월

<변경후1>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경력
			운용중인	운용자산규모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수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강현담	1988	차장	13개	7,607억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년 7개월
이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펀드수			운용규모	
-서울대 경영학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차장(2014.06~현재)					12개			6,262억원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타임폴리오위드타임증권모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경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자산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함병현	1984	본부장	13개	7,607억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년 3개월
이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펀드수			운용규모	
-서울대 경영학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이사(2010.04~현재)					12개			6,262억원	

<변경전2>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수령요건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의 12%(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엔 15%) 단, 세액공제 대상 연간 저축금액은 400만원 이내

<변경후2>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C-P, C-Pe, S-P 가입자에 한함]

구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p>[납입금액]</p> <p>-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p> <p>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p> <p>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p> <p>[세액공제]</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